

서울특별시 마포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17-55
----------	-------

제출년월일 : 2017. 5. .

제 출 자 :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

1. 개정이유

지방세의 징수규정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지방세기본법」에서 「지방세징수법」으로 분리·제정(법률 제14476호, 2016.12.27.공포, 2017.3.28. 시행)됨에 따라 「서울특별시 마포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에 인용된 근거법령을 반영하고자 이 조례를 일부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지방세징수법」 등 인용조문 변경(3개 조문)

- 지급대상(안 제2조), 지급(안 제7조), 환수(안 제8조)

나.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용어에 따라 관련 조문 정비(4개 조문)

- 목적(안 제1조), 지급대상(안 제2조), 지급기준(안 제3조), 세입징수공적심사위원회 구성 등(안 제4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세기본법」, 「지방세징수법」,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규제여부 : 해당사항 없음

4. 기타사항

가. 입법예고 결과 : 2017. 4. 27. ~ 5. 17.(제출된 의견 없음)

나. 가정복지과의 자치법규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 원안 동의

다. 감사담당관의 자치법규 부패영향자율평가 결과 : 원안 동의

라. 서울특별시 마포구 조례·규칙 심의회 심의·의결(2017. 5. 23.)

마. 서울특별시 마포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바. 신·구조문 대비표 1부. 끝.

서울특별시 마포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마포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관하여 필요한”를 “필요한”로 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사람에 대하여”를 “사람에게”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당해”를 “해당”으로, “공무원(기능직·별정직 및 고용직공무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공무원”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지방세기본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징수촉탁에 의하여”를 “「지방세징수법」 제18조에 따른 징수촉탁으로”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징수촉탁에 의하여”를 “징수촉탁으로”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국세징수법」 제7조의4”를 “「지방세징수법」 제8조”로, “「지방세기본법」 제132조”를 “「지방세기본법」 제111조”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1호 중 “「지방세기본법」 제97조”를 “「지방세징수법」 제39조”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제1호 중 “채납자에 대하여”를 “채납자에게”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67조”를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31조”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본문 중 “공무원에 대하여”를 “공무원에게”로 한다.

제3조제7호 중 “의하여”를 “따라”로 한다.

제4조제3항제2호 중 “자”를 “사람”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1회에 한하여”를 “한 차례만”으로 한다.

제7조제3항 중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90조제3항 및 제4항을”을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36조제2호를”로 한다.

제8조제3항 중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를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세정발전 과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공무원 및 민간인에 대한 포상금 지급 에 <u>관하여 필요한</u> 사항을 규정 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지급대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u>사람에</u> <u>대하여는</u> 제3조의 지급기준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한다.</p> <p>1. 지난 연도 체납액(부과 <u>당해</u> 연도 종료일로부터 2개월 미 경과분은 제외하며, 이하 “체 납액”이라 한다)을 징수하거 나 징수하게 한 특별한 공적 이 인정되는 <u>공무원(기능직·</u> <u>별정직 및 고용직공무원을 포</u> <u>함한다. 이하 같다)</u> 및 민간인</p> <p>2. 3. (생략)</p> <p>4. 「지방세기본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징수촉탁에 의하 여 세입증대에 기여한 공무원</p> <p>5. 자동차 관련 과태료 징수촉 탁에 <u>의하여</u> 세입증대에 기여 한 공무원</p>	<p>제1조(목적) ----- ----- ----- <u>-필요한-</u>----- -----.</p> <p>제2조(지급대상) ① ----- -----<u>사람에</u> <u>게</u>----- -----.</p> <p>1. ----- <u>해당</u> ----- ----- ----- ----- -----<u>공무원</u>----- -----</p> <p>2. 3. (현행과 같음)</p> <p>4. 「지방세징수법」 제18조에 <u>따른 징수촉탁으로</u> ----- -----</p> <p>5. ----- <u>징수촉</u> <u>탁으로</u> ----- -----</p>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특별한 공적”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적으로 제4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마포구 세입징수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인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서울특별시 마포구 세입금 (구세 및 구 세외수입을 말한다)을 체납한 자에 대하여 납부 독려, 체납처분, 자동차등록번호판 영치, 관허사업 제한, 체납 또는 결손처분 자료 제공, 고액·상습체납자 명단 공개, 「국세징수법」 제7조의4에 따른 출국금지 요청, 「지방세기본법」 제132조에 따른 고발 또는 그 밖의 관련 법령에 따라 강제 징수한 경우

2. 3. (생략)

③ 제2항제2호에 따른 “은닉재산”이란 체납자가 은닉한 현금·예금·주식, 그 밖에 재산가치가 있는 유·무형의 재산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

② -----

1. -----

----- 「지방세징수법」 제8
조-----
-- 「지방세기본법」 제111조

2. 3. (현행과 같음)

③ -----

는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을 제외한다.

1. 「지방세기본법」 제97조에 따른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 소송의 대상이 되어 있는 재산

2. 3. (생략)

④ 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제2항에 따른 특별한 공적이 없이 체납자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체납세액 고지서를 발송하고 납부기한 내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

2. (생략)

3.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67조에 따른 징수유예등의 결정에 따라 납부기한이 다음 연도로 이월된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

⑤ 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국장급 이상 관리직에 해당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체납액

-----.

1. 「지방세징수법」 제39조--

2. 3. (현행과 같음)

④ -----

-----.

1. -----
-- 체납자에게 -----

2. (현행과 같음)

3.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31조-----

⑤ -----

공무원에게-----
-----.

을 직접 징수한 특별공적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⑥ (생략)

제3조(지급기준) 포상금의 지급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 6. (생략)
7. 제2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의하여 징수촉탁으로 징수한 경우에는 수탁기관이 교부받은 징수촉탁교부금의 100분의 10

제4조(세입징수공적심사위원회 구성 등) ①·② (생략)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기획경제국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생략)
2. 지방세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 3명
- ④ 제3항제2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⑤ ~ ⑧ (생략)

제7조(지급) ①·② (생략)

--.

⑥ (현행과 같음)

제3조(지급기준) -----
-----.

1. ~ 6. (현행과 같음)
7. -----
따라 -----

-

제4조(세입징수공적심사위원회 구성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1. (현행과 같음)
2. -----
----- 사람 -----

- ④ -----
----- 한 차례
만 -----.

⑤ ~ ⑧ (현행과 같음)

제7조(지급)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포상금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90조제3항 및 제4항을 따르되, 수령자가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에 개설한 예금계좌에 이체입금시키는 방법에 따라 지급한다.

제8조(환수) ①·② (생략)

③ 제1항에 따라 환수할 경우 포상금을 지급받은 날부터 환수통지가 된 날까지의 기간에는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에 따른 이자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환수할 금액에 가산하여야 한다.

③ -----
---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36조제2호를 -----

제8조(환수)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

